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44호

2021.1.18.(월)



목 차

◆ 고 시

제2021-33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2

제2021-34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5

제2021-35호 특수판매업체 집합제한 전환 고시10

제2021-40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5단계 연장)에 따른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12

제2021-41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파티룸 집합금지 명령18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3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2021.01.18.)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 21. 01. 18.(월) 0시 ~ ' 21. 01. 31.(일) 24시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내 집합제한 조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5. 업종별 방역수칙

①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①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②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③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④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⑤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⑥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을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⑦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의 모든 발한실 운영금지 ⑧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⑨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⑩ 탈의실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두어 배정하기	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 마스크 착용 ③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④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준수 ⑤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의 모든 발한실 이용 금지

② 이 · 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①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②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③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④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⑤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⑥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⑦ 손님 예약제 운영 ⑧ 손님 음료 제공 금지	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 마스크 착용 ③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④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③ 숙박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①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②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③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④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⑤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②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③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준수 ④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 금지 ⑤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 '이용자' 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6.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년 01월 18일 0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4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유사영업 형태 포함) 등, 음식점 및 카페 (무인카페 포함)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1년 1월 18일(월) 00시 ~ '21년 1월 31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

- 기 간 : '21년 1월 18일(월) 00시 ~ '21년 1월 31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및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핵심방역수칙¹⁾ 준수 의무화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수칙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 ▶ 시설 관리자·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1) 붙임1 핵심방역수칙 참조

3. 영업형태 정의

○ 음식점 및 카페

음식점	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식사류와 곁들이는 커피·음료·디저트류) 커피·음료·디저트류(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등)로 식사 끝에 나오는 음식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랜차이즈형 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홀덤펍

-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펍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 무인카페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득하고 관리자·종사자가 매장 내 상주하지 않으며, 고객이 자판기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곳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마스크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90호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 명령 변경고시」에 따름
 ※ **5인이상 사적모임, 행사 등 금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에 따름

-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1월 18일 00시부터
- 6.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8.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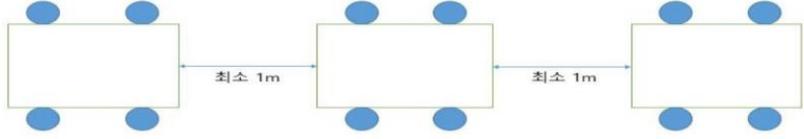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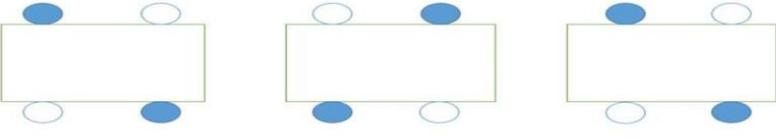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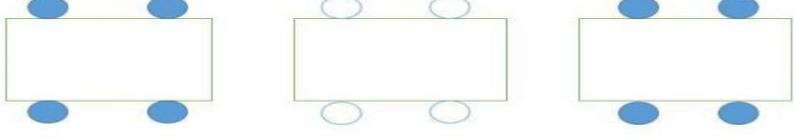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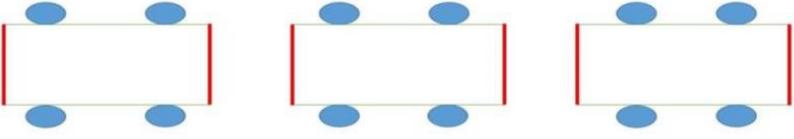
붙임 핵심방역수칙 1부. 끝.

붙임

핵심방역수칙(조정)

구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p>음식점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 및 무인카페로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p>	<p>①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의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p> <p>②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150m이상 음식점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 - 150m미만 음식점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p> <p>③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p> <p>④ 방역관리자 지정</p> <p>⑤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p> <p>⑥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p> <p>⑦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p> <p>⑧ 50㎡ 이상 시설 대상 I)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II) 좌석 한칸 띄워앉기 III) 테이블 간 띄워앉기 IV)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V) 테이블 또는 좌석 한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기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p> <p>⑨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p> <p>⑩ 주문·계산 시 종사자와 이용자간 거리 두기 - 주문·계산대 앞 칸막이·가림막 설치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바닥표시)</p> <p>⑪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p> <p>⑫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 안내문 부착</p> <p>⑬ 2인 이상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p> <p>⑭ 영업장 내 설치 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 금지</p>	<p>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의 음식 포장·배달만 가능</p> <p>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p> <p>③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p> <p>④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주문·계산·대화 및 이동 시 착용</p> <p>⑤ 50㎡ 이상 시설 대상 테이블간 1m 거리 두기가 안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p> <p>⑥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p> <p>⑦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 (권고)</p> <p>⑧ 2인 이상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 (강력권고)</p>
<p>보드카페 등 홀담뽀유사업 (일반·휴게음식점)</p>	<p>①~⑭ 공통</p> <p>⑮ 시설 신고면적 8㎡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p>	<p>①~⑧ 공통</p> <p>⑨ 시설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p>
<p>뷔페추적용</p>	<p>①~⑭ 공통</p> <p>⑩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p> <p>⑮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p>	<p>①~⑧ 공통</p> <p>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p> <p>⑪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p>

< 좌석 도식도(예) >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p>The diagram shows three rectangular tables arranged horizontally. Each table has four blue circular seats (two on each long side). Arrows between the tables indicate a minimum distance of 1m between them.</p>
좌석 한 칸 띄워앉기	 <p>The diagram shows three tables with four seats each. The seats are arranged in a staggered pattern: the top row has blue seats on the left and white seats on the right, while the bottom row has white seats on the left and blue seats on the right.</p>
테이블 간 띄워 앉기	 <p>The diagram shows three tables with four seats each. The seats are arranged in two rows: the top row has blue seats on both sides, and the bottom row has white seats on both sides. There is a gap between the tables.</p>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p>The diagram shows three tables with four seats each. Red vertical lines are placed between the tables to represent dividers. The seats are blue on both sides of each table.</p>

※ 테이블은 몇인용인지,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 가림막은 높이 90cm 이상,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5호

특수판매업체 집합제한 전환 고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함께 방역수칙 조정(집합제한)에 따라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으로 전환하였음(2021. 1. 18.)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집합제한 전환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 기 간 : 2021. 1. 18.(월) 0시부터 ~ 1. 31.(일) 24시
- 내 용
 - 서울시 특수판매업체에 대하여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이용인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노래부르기 금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준수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2.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부과사유 : 특수판매업체 시설에서의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이행 의무부과

다.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라. 부과대상 : 서울시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관리자·운영자·이용자)

마. 부과금액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1차), 300만원(2차) 부과
-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바. 효력발생일 : 2021. 1. 18.(월) 0시 부터

사. 불복절차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고발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0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5단계 연장)에 따른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 '21년 1월 18일 (월) 0시 ~ '21년 1월 31일 (일) 24시

2. 대 상

-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
- 서울시 소재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등
 - * ①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종합소매업
 - ②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도매업 제외)
(예 : 대형마트, 특정 품목(의류·가전·가전용품·서적 등)에 특화된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공구·아파트 상가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
- 서울시 소재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및 보험회사 전화영업점(대리점)

3. 내 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노래연습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코인노래방은 8㎡당 1명 준수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p>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

○ PC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강화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제로페이 QR인정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흡연구역 1인 사용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 수 제한 표시 ▶ 좌석 구분 칸막이는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일 것 (예. 앉은 시선 높이) ▶ 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테이블,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등 소독 후 재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강화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구역 1인 사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영화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약제 등 통제 인원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강화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제로페이 QR인정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상영관 내 거리두기 좌석 밴딩처리 등 물리적 조치 의무화 ▶ 매표소, 매표점, 대기공간 등 이동 시 거리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이동동선을 바닥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 ▶ 출구와 입구 동선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오락실·멀티방 등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강화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페이 QR인정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흡연구역 1인 사용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수 제한 표시 ▶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이용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강화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구역 1인 사용
---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직업훈련기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강화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페이 QR인정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강의실 입구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수료기준에 맞는 훈련생 조기 종강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시설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준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대형유통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강화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금지 ▶ 백화점 고객 대상 무료 식음료 제공시 시설 내 취식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 대형유통시설 내에서 운영중단 대상이 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공간」을 의미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키즈카페는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콜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강화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2 강력 권고 ▶ 모든 출입자 통제관리 및 모든 근무자 대상 1일 2회 이상 발열증상 점검 ▶ 발열 등 의심환자가 3~4일 내 동시 발생시 (2~3명 이상) 모든 유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 직원 간 거리두기(2m 이상, 최소 1m 이상) 및 칸막이 설치(90cm 이상) ▶ 휴게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 이용 제한 ▶ 단체식사 및 대면교육 제한 ▶ 환기(매 2시간), 소독(물품 등 일 2회, 전체 사업장 주1회 이상) 실시 ▶ 일일 방역관리대장 기록·관리 ▶ 서울시 소재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직원 마스크 착용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강화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 사무기기 등 개인공간 소독 등 방역관리 ▶ 구호외치기 등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4. 위반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5.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1월 18일 0시 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노래연습장 02-2133-5238, PC방·오락실 02-2133-5242, 영화관·멀티방 02-2133-5236, 대형유통시설 02-2133-5258, 콜센터 02-2133-5244),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직업훈련기관 02-2133-546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파티룸 집합금지 명령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2021.01.18.)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파티룸에 대하여 집합금지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집합금지명령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소재 파티룸
- 기 간 : 2021.01.18.(월) 0시부터 ~ 2주간(2021.01.31.(일) 24시까지)
- 내 용 : 파티룸*의 집합행위금지
 - * 파티룸 :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 ‘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효력발생일 : 2021년 1월 18일 0시

2. 위반 시 조치사항

- 고발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체에서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불법적 집합행위의 장소를 대관하는 자는 형법상 방조죄로 고발조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